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역사공원간(대로 1-5호선)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출출시 ㉠㉠㉠과에서는 2014. 6. 2. 00건설(주) √/√/과 “㉠㉠㉠~㉠㉠㉠역사공
원간(대로 1-5호선)도로개설공사” 계약(계약금액 00,000백만원)을 맺고 2014. 6. 3.
착공하여 2018. 9. 4일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세륜세차시설 설계 부적정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세륜세차시설 3개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시행하면서 시·
중점부 2개소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고, 1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할 뿐 아니라 불필요 하다는 사유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현장 여건상 세륜세차시설의 설치가 어렵거나 불필요할 경우 설치하지

않은 세륜세차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하지 않고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하였다.

2. 환경보전비 중복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 공사 원가계산서에는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000,000천원의 환경보전비를 반영하고도 이와는
별도로 설계내역서에 환경관리비를 중복 반영하여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 하였다.

3. 콘크리트 암거(수로 및 통로) 설치에 따른 가배수로 설치 과다 계상

수로BOX 신설에 따라 계획된 가배수로의 경우 톤마대 쌓기 및 헐기가 경제
적이고 시공성이 우수함에도 고가의 P.P마대 쌓기 및 헐기를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4. 하수관 수밀시험 및 상수관 수압시험 분리발주 미이행

환경부 하수67712-549(2003.05.22)호에 따르면 하수관과의 신설 또는 개량공사
시 CCTV검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
함에 따라 품질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지자체에 분리
발주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수밀시험 및 수압시험을 분리발주하여 품질시험의 실효성
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부당
계상 하였다.

5. 품질시험비 및 가설건물 등 제경비 과다계상

품질시험비 및 가설건물 등은 경비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적용하여 불필요한 간접노무비 등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경산시 ㉸㉸㉸㉸과에서는 총 사업비 0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시 ㉸㉸㉸과에서는 2014. 8. 12. (주)상건설 √√√와 “◇◇~◇◇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약(계약금액 000백만원)을 맺고 2014. 8. 18. 착공하여 2016. 10. 7일 준공예정(2016. 8. 29 ~ 시공중지)으로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14년 2월 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에서는 “낙석방지울타리는 일반적으로 낙석발생이 예상되는 절개면의 최하단 또는 중간에 설치하여 낙석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석방지울타리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에서 해당 공종이 아직 착공되지 않았다면 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낙석방지울타리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낙석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불필요 구간에 낙석방지 울타리 190경간(1경간 2.0m)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낭비되게 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간 선형개량공사 외 2건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〇〇〇〇과, 〇〇〇과
내 용	

출출시에서는 2014. 1. 17. (주)〇〇건설(대표이사 √√√)과 “◇◇~◇◇간 선형개량공사” 계약(계약금액 1,732백만원)을 맺어 2014. 1. 20. 착공하여 2017. 1. 16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등 총 3건의 도로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재정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33조)」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2012. 11.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의 배수는 노면수의 흐름지체, 월류, 지하수 유입 등으로 도로 하부지반이 약화되거나 포장의 손상 등을 방지하고, 배수시설의 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도로기능 유지와 교통안전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면 배수는 도로 노면에 내린 우수를 L형측구, 집수정 등의 노면 배수시설을 통하여 배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노면의 배수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 및 도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L형 측구를 설치하며, 측구의 연장 시공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13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형 측구는 기계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인력타설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 3,216.8m의 L형측구에 대해서는 시공성과 미관,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타설로 설계를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별표 2] “L형측구 설계 및 시공 내역”과 같이 총 3건의 공사에서 L형측구를 시공성과 미관,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에 불리한 인력타설로 설계하여 그대로 시공할 예정이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을 낭비되게 하는 등 공사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블록)관리시스템 구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충주시 <<<<과에서는 2016.6.22.(주)√/√ 건설 √/√과 공사계약(0,000백만원)을 맺고, 2016.6.27. 착공하여 2020.6.25. 준공 예정으로 ◇◇◇◇◇ ◇◇(블록)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그런데도, 충주시 <<<<과에서는 ◇◇◇◇◇ ◇◇(블록)관리시스템 구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포장복구에 필요한 기층용 아스콘 1,032ton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는 것이 품질관리와 공사비 절감 등에 유리한데도 시공 효용성을 이유로 사급자재(00,000천원, 제경비 포함)로 반영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하지 못하였고,

관로매설시 터파기 깊이 2m 이내는 직접 터파기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터파기 깊이가 1.7m인 KS2 중블록 L=400m 구간에 고가의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반영하여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르면 시험검사비는 경비성 단가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등으로 구분 산정하여 사업비 0,000

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였음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계상 되게 하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4 ≡≡≡≡≡≡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시 ♣♣과에서는 ♣♣4 ≡≡≡≡≡≡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2016. 2. 17. (주) ≡≡≡ ≡◇◇◇과 계약체결하여 2018. 2. 1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교량점검시설 관련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구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상부구조 점검통로는 현수교·사장교·트러스교 등과 같은 특수교량 중에서 이동식 접근장비로는 상부구조의 주요부재를 점검할 수 없는 교량과, 수시점검이 필요한 교량중에서 이동식

접근장비 사용시 교통혼잡 등으로 상부구조 점검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량, 하부구조 점검통로는 형하공간이 6.5m 이상인 교량의 교각 또는 교대로서 이동식 접근장비로 점검이 불가능한 교량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읍읍시 ㉠과에서는 교량(00교)을 가설하면서 이동식 접근장비(교량점검차, 굴절차 등)로 교각, 교대 및 슬래브 등 교량의 주요부재를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음에도, 교량(문천교 A1, P1)에 대한 교량점검시설인 하부구조 점검통로 설치비를 반영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2. 미끄럼방지 포장 관련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014.2.) 제4편에 따르면 미끄럼방지 포장편 규정에 의하면 신설도로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미끄럼방지포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읍읍시 ㉠과에서는 읍읍4 ㉡ 진입도로 개설공사 구간의 신설되는 도로는 미끄럼마찰 기준 이상으로 별도의 미끄럼방지 포장이 불필요함에도, 관급자재로 미끄럼방지 포장(849㎡)을 적용하여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읍읍시 ㉠과에서는 ㉢ ㉢㉢㉢ ㉠개발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2015. 12. 31. < < < 종합건설(주) △ △ △와 계약체결하여 2017. 6. 28.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차선도색 관련

「경상북도 설계실무요령」 제2장 16.도로의 부속시설 기준에 의하면 차선도색의 경우 지방지역은 페인트식, 일교통량 10,000대 이상인 시가지지역은 용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읍시 ㉠㉡과에서는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단가가 경제적인 상온형 차선도색(1㎡당 0,000~0,000원)이 적정한데도, 고가의 용착식(1㎡당 00,000~00,000원) 차선도색을 적용하여,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2. 가설사무실 설치 관련

당초 설계서에는 가설사무실 350㎡, 가설창고 100㎡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에 설치된 가설사무실 확인 결과, 가설사무실 350㎡는 계획대로 설치되어 있고, 가설창고 100㎡는 감사일 현재까지 미 설치 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감액 조치 미 이행으로 공사비 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 적용과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읍시 ㉤㉥과에서는 ㉠㉡㉢ 종합정비사업을 2014. 4. 17. (주)ㅍㅍㅍ건설 ㉦㉧㉨과 계약체결하여 2016. 11. 2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1. 콘크리트 포장 관련】

「건설표준품셈」 제12장 도로포장 및 유지 12-3-2 콘크리트 표층(인력시공)에 의하면 포장두께 20cm의 경우 일당 시공량 100㎡, 포장공 3인, 보통인부 3인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본 품은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에 대한 품으로,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출시 ◎◎과에서는 €€€€ ▷▷▷▷▷의 목적으로 ▷▷▷▷▷ ▷▷▷▷▷, ▷▷▷▷▷ ▷▷▷▷▷, €€€€ ▷▷▷▷▷을 2013년 설계하여 2014년 같은 해에 3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콘크리트 포장(t=20cm) 단가산출에 대하여 ▷▷▷▷▷ ▷▷▷▷▷ ▷, ▷▷▷▷▷ ▷▷▷▷▷은 단가가 경제적인 「건설표준품셈」 제12장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인력시공) 품을 적용하였으나, 본 공사 €€€€ ▷▷▷▷▷은 단가가 고가인 「건설표준품셈」 제6장 철근콘크리트 타설품을 적용하였고, 또한 비닐 깔기, 철망깔기, 양생에 대한 재료비만 반영하여야 함에도 설치비까지 과다 계상·시공함에 따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총 사업비 00,000천원(낭비 00,000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출출시 ⊗⊗과에서는 관내 00동 00-0번지 일원에 €€€€€€€€€€ 건립공사를 '15.12.15. ▶▶건설(주) 대표 √√√와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5.12.18.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철근가공은 공장가공이 경제적임에도 현장에서 인력으로 가공하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현장가공을 반영함으로서 공사비 00,000천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철근가공물량은 실지 가공되는 물량만 산출하여야 함에도 철근 전체물량을 반영 공사비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계단핸드레일설치는 평철에서 스테인레스관으로 변경시공 하였음에도 공사비 0,000천원에 대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고, 운반비는 경비성단가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등으로 계상하여 제경비 등 공사원가 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어 있으며, 잔토처리 운반차량이 15톤으로 설계되

었으나 24톤차량으로 운반이 이루어져 공사비 0,000천원이 줄었으나 감액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낭비되고, 공사비 00,000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16.11.4.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홀홀체육센터(수영장)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산시
관 계 부 서	경산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홀홀시 ⊗⊗과에서는 관내 00동 0-0번지 일원에 홀홀체육센터(수영장) 건립공사를 '15.6.22. (주)√/√/√/√/√ 대표 √/√/√과 도금액 0,000,000천원에 계약하고 '15.12.11. 착공하여 추진하면서,

지붕공사 하지철물의 경우 C형강을 조립·제작하는 것으로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품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잡철물제작 설치품을 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고, 지하층 기계실 및 수영장의 바닥단열면적 821㎡가 과다반영 공사비 00,000천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아스콘포장공사에서 동결심도 깊이 이하에서는 불필요한 동상방지층이 반영되어 공사비 0,0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 00,000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어 감액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16.11.4.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산시장은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00,000천원은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